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2021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I. 감사 개요

- 수감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감사기간: 2021. 4. 12. ~ 4. 30. / 13일간
 - 사전조사: 2021. 4. 12.(월) ~ 4. 14.(수) / 3일간
 - 본 감 사: 2021. 4. 19.(월) ~ 4. 30.(금) / 10일간
- 감사인원: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철용, 황기영, 장기순 / 3명
- 감사범위: 이전 자체종합감사('19. 5. 31.)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II. 감사 결과

- 처분 요구 건수: 15건
 - 징계 1건, 시정 3건, 경고 1건, 주의 5건(기관주의 3건 포함), 개선 1건, 통보 4건

III. 처분 요구 내역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일반	시정 완료 (금액)	모범 사례 (인원)		
15	25,577	7	1 (2)	3 (25,577)	1 (1)	5 (4)	1	-	4	-	-	-	-

IV. 지적 및 처분 조치 내용(요약)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1	통보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회계법”)에 따르도록 규정 ○ 대학회계법에는 국가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을 통합 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대는 2016년부터 통합 운영하다가 2018년 이후 자체재정 프로그램 기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분리하여 운영 ○ 대학회계법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대는 국가지원금(자체수입금 미포함) 위주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수립하여 운영 ○ 전통대의 재정위원회는 자체수입금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결산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등 대학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영 필요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회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마련, 재정위원회 적극적으로 운영 	
2	개선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강사 신규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 회피 절차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채용 시에 심사위원과 응시자의 친족관계, 이해관계 여부 등을 심사위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 전통대 석사, 박사 학위 응시자 지도교수가 제척·회피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2019년도 2학기 1명, 2020년도 1학기 1명, 총 2명)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신규채용 시 심사위원과 응시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연 제척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3	시정 (환급)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등록금 미반환 부적정</p> <p>○학생이 자퇴, 미복학 등을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 총 3명이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되었는데도, 기 납부한 등록금 2,585,290원을 미반환</p> <p><처분내용></p> <p>○자퇴 등의 사유로 반환조치가 필요한 등록금 2,585,290원을 대상자에게 반환</p>	
4 · 5	통보 · 시정 (환수)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원 부적정</p> <p>○「대학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자체수입금으로 편성할 때에는 이전 회계연도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하나, -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실적을 보면 전년도 결산액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 편성(41백만 원 ~ 164백만 원)</p> <p>○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지원비가 계획서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별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여야 하나, - 당초 계획서와 다르게 실적을 인정하여 총 9건 9,820,000원이 과지급</p> <p>○지원 계획의 “예산이 남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한 단서 조항은 당초 세부기준과 상반되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평가항목별 지급기준을 마련함이 타당</p> <p><처분내용></p> <p>○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결산액 범위 내에서 편성(통보)</p> <p>○당초 계획서와 다르게 실적을 인정하여 과 지급한 9건 9,820,000원을 환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구체적인 평가항목별 지급기준 마련[시정(환수)]</p>	

연번	처분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고
6	통보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공고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가점(5%, 10%)을 적용해서는 안 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가점을 우대사항으로 명시하여 공고하거나, 공고 후 서류전형에서 보훈가점 적용(채용 공고 22건 중 6건) ○ 채용공고 시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배수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배수를 불명확하게 공고(채용 공고 22건 중 2건)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등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보훈가점 부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을 명확히 공고 	
7	통보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학생 출석부 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부는 학생성적, 교원의 휴강에 따른 실제 보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출석부와 실제 교원의 보장일을 대조한 결과, 총 382건 중 74건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출석부 관리 미흡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장계획과 일치하도록 출석부를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관리 	
8	주의요구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미조치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카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캐시백(cash back) 등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전액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금 지출액 중 포인트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 173,108원 상당이 소멸('15. 2. ~ '16. 4.)되어 세입 손실이 발생(현재 1,746,528 포인트 사용 가능)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카드 사용으로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세입조치, 포인트 환수 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9	기관 주의	<p><지적내용> <input type="checkbox"/> 소방계획 수립 지연 부적정 ○ 차기 연도 소방계획은 소방계획에 대한 수립·검토 및 승인을 미리 완료하여 그해 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방계획을 8개월에서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수립, 2021년 소방계획은 아직 미수립</p> <p><처분내용> ○ 금년도 소방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시고, 매년 소방계획은 당해 연도 초에 수립·시행</p>	
10	기관 주의	<p><지적내용>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계약체결 부적정 ○ 공사에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적합한 종목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7건(123,981천 원)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공사내용과 다른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체결</p> <p><처분내용> ○ 건설공사를 계약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내용에 적합한 종목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 체결</p>	
11	기관 주의	<p><지적내용> <input type="checkbox"/> 하자검사 미실시 부적정 ○ 시설공사 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나, - 2018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후 현재까지 미실시 - 대학원종합연구관 건립 건축공사 현장에 잔디 식생 불량, 지반 침하로 인하 배수불량 등의 하자 조치 필요</p> <p><처분내용> ○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자 확인 시 조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p>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12 · 13 · 14 · 15	징계 요구 · 시정 (환수) · 경고 · 주의	<p><지적내용></p> <p>□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p> <p>○초과근무는 근무지에서 하는 등 초과근무수당이 부정하게 지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퇴근 후 재택에서 원격접속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부탁하여 퇴근시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실시</p> <p><처분내용></p> <p>○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A와 B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p> <p>[경징계 요구, 시정(환수)]</p> <p>○B의 퇴근시간을 대신 지정해 준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경고)</p> <p>○초과근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초과근무명령권자 3명에게 주의 촉구, 앞으로 초과근무 관리·감독 철저(주의)</p>	